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가. 제안이유

-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일부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며 용어 정비 등 필요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안 제4조의5 및 안 별지 제9호서식)
- 1일 주차권 미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및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요금에 대해 5급지 기준 요금으로 적용토록 개정(안 제12조)
-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1조의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현행화(안 제22조)
- 월정기권 발급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행정부 명칭 및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 적용대상자 현행화(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일부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며 용어 정비 등 필요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시정 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서울시 협조 요청 등으로 우리 구 또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이용대상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 공영주차장이 무인화로 전환되어 1일 주차권 제도가 미운영됨에 따라 1일 주차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 요금에 관한 조문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244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 일부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며 용어 정비 등 필요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안 제4조의5 및 안 별지 제9호서식)
- 나. 1일 주차권 미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및 운송사업용 차량의 월 정기권요금에 대해 5급지 기준 요금으로 적용토록 개정(안 제12조)
- 다.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1조의3)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현행화(안 제22조)
- 마. 월정기권 발급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행정부 명칭 및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 적용대상자 현행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8. 31.~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의 제목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제4조의5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를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다만, 1일 주차권 또는”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전단 중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제8조의제6항 관련)”을 “(제8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구획당)

| 구 분 | 노 상 주 차 장 | | | 노 외 주 차 장 | | |
|-----|------------------|---------|--------|------------------|---------------------------------------|---------|
| | 1회 주차시 5분당 | 월정기권 | | 1회 주차시 5분당 | 월정기권 | |
| | | 주간 | 야간 | | 주간 | 야간 |
| 1급지 | 500 | 200,000 | - | 400 | 250,000 | 100,000 |
| 2급지 | 250 | 100,000 | - | 250 | 180,000 | 60,000 |
| 3급지 | 150 | 80,000 | - | 150 | 100,000 | 40,000 |
| 4급지 | 100 | 50,000 | - | 100 |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 20,000 |
| 5급지 | 50 | 30,000 | 20,000 | 50 | 30,000 | 20,000 |

※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1급지)은 일 3만6천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경인로·선유로·노들로·도림로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나.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사.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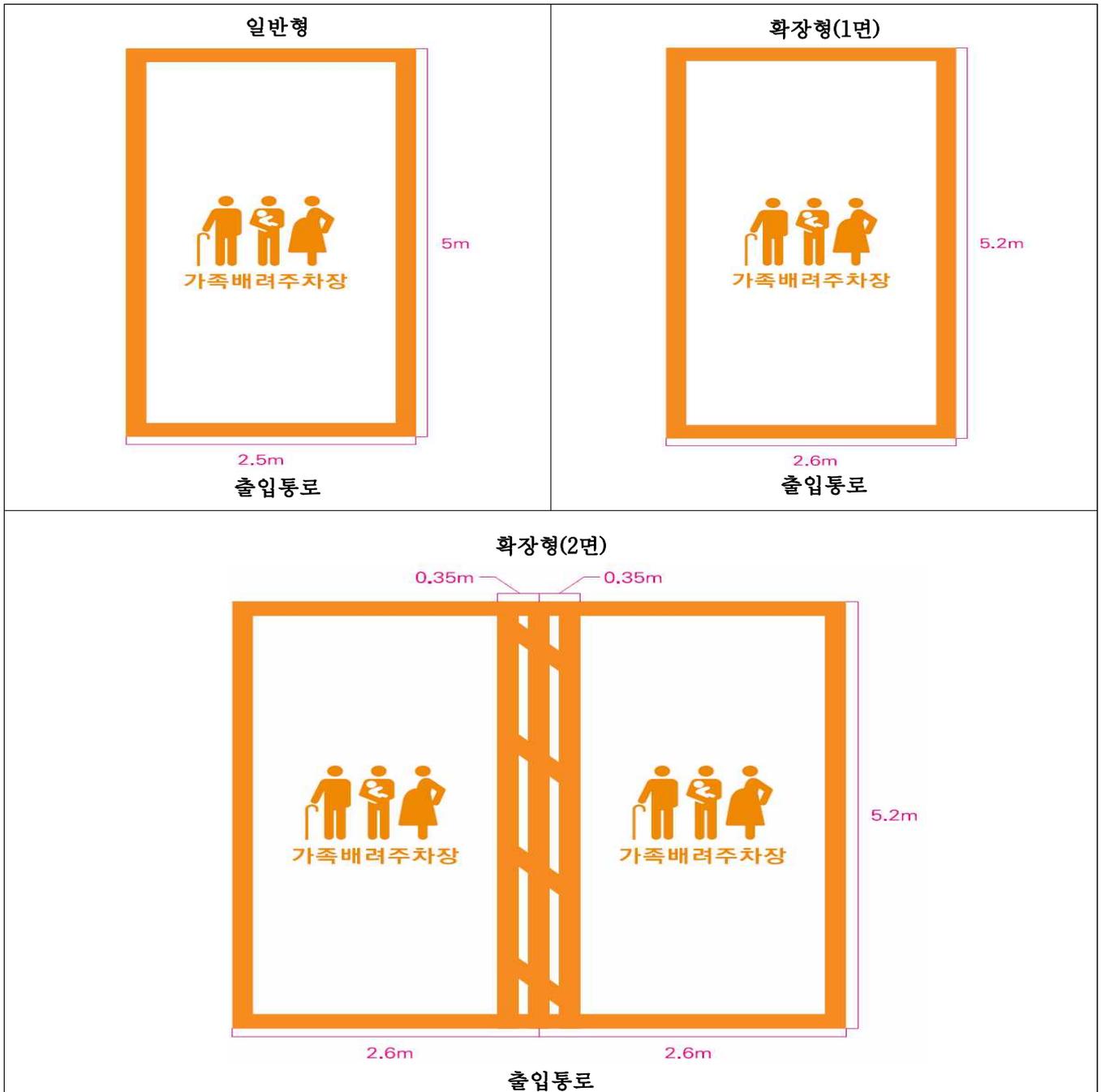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및 주차장 공유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공영주차장에 최초로 입차한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구청장은 모범·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9.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
12.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14. 구청장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6.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 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7.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18.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0. 구청장은 호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복지카드(백세카드)사업에 참여중인 으뜸업소의 대표자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영등포구 공무수행 차량과 영등포구 주최·주관 행사 운영 또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임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4.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5.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4조의5제5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의5(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p> <p><신 설></p> <p>②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 <p>제4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p> <p>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p>④ 가족배려주차장 ----- ----- ----- ----- --.</p> |

1. (생 략)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

1. (현행과 같음)
2. -----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조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생략)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

----- . 다만, -----

② -----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③ -----

----- 한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단,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

-----.

1.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

4.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
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
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제22조(용자의 대상) ① (생략)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용자의 대상) (현행 제1항
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내역

- 관내 공영주차장 기존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에 따라 주차구획 도색 비용 발생: 191,6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 공영주차장 여성우선 479면 × 400천원 = 191,600천원
※ 1구획당 기존 삭선 및 신규도색 비용 400천원 추산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안전교통국 주차문화과 안형복 |
| 연 락 처 | 02-2670-3899 |